

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개발범위 분쟁, 쌍방 귀책으로 과제중단,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처분 - 적법: 서울행정법원 2022. 7. 7.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

- A. 스마트공장 과제 진행,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중간점검 결과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쌍방귀책 이유로 사업 중단 결정
- B. 협약해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통보 +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
- C. 쌍방 귀책 이유

□ 주요 귀책사유

○ D(도입기업)

- 1차과제 하자보수 기간 중 무리한 2차과제 추진
- 2차과제 사업계획 범위를 벗어나는 지나친 개발 요구

○ 원고(공급기업)

-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 부족
- 1차과제 하자보수와 2차과제 고도화 간 업무범위 구분 및 관리 미흡

2.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제재조치

처분의 제목	이 사건 사업 협약해약 과제의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			
관련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 사건 사업 세부관리기준(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) 제27조, 제28조, 제32조, 제42조, 제46조 - 이 사건 협약서 제11조, 제13조, 제18조 			
처분의 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9. 11. 27. 협약해약 심의위원회 결과 : “협약해지(쌍방귀책)” - 2019. 12. 2. 협약해약과제 보고 및 제재요청(피고 B -> 추진단) 			
심의 결과	<p>협약해약 심의위원회 결과 협약해지된 사안으로 쌍방귀책이 인정되고, 이 사건 세부 기준 제46조 제1항 및 협약서 제13조 제1항 제2호, 제2항 제3호, 제18조(일반사항) 등에 따라 해당기업(도입기업 및 공급기업)에 대해 정부출연금 전액(98,023,000원) 환수 및 참여제한 1년이 타당함.</p> <p>(환수금 98,023,000원은 2020년 1월 29일, 1월 21일(2회) 납부완료)</p>			
처분의 내용	도입기업	D	참여제한	1년(2020. 5. 7. ~2021. 5. 6.)
	공급기업	원고	환수금	정부출연금 전액 환수
참여제한			1년(2020. 5. 7. ~2021. 5. 6.)	

3. 공급기업의 불복 -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 제기

4.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

(1)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

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, 원고의 경우 제재조치

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

을 받은 점,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

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'참여제한' 제재

조치와는 달리,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

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(관리지침 [별표] 참조)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

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·

남용하여 위법·무효라고 볼 수 없다.

(2)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

생하므로,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

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.

(3)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42조(사업비의 환수)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 '실패'인 과제의 경우 공급기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. 제46조(기업에 대한 제재)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실패 판정된 과제의 대상기업에 대해 해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,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 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.

첨부: 서울행정법원 2022. 7. 7.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

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